

주민세 납부를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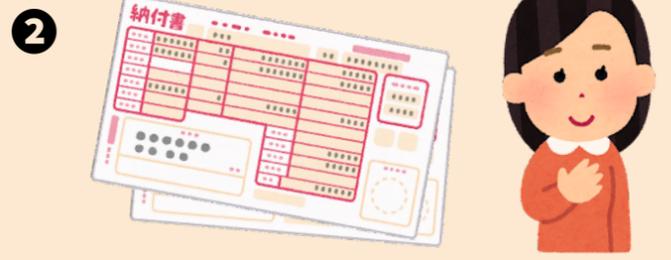


주민세란?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서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살고 있는 행정지역(시구청촌)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의 납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의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주민세 납부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징수」 -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회사 등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고 시구청촌행정기관에 지불합니다. 회사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별징수'가 원칙이며, 개인이 직접 시구청촌행정기관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특별징수」 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는,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경우는, 회사 등에 확인해 주세요.

「보통 징수」 - 개인이 직접 납부

행정기관(시구청촌)에서 6월경에 보내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자동으로 은행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일시불(연1회)」 또는 「할부납부(연4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납부」로도 납부가 곤란한 경우,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촌 세무 담당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 계좌이체 신청에 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구청촌행정기관에 상담해 주세요.

주민세가 미납된 경우...



재류기간 갱신 신청 등의 출입국관리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세 납부상황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체납은 심사의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 「영주허가신청」은 특히 심사가 엄격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

A) 「특별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

회사 등을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보통징수」, 혹은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시구청촌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인 「일괄징수」가 있습니다.



B) 「보통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

일본에서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통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출국하기 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납세 관리인」을 정해서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납세통지서 수령이나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절차를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생활지원 포털사이트 「세금」입니다

다국어로 「세금」의 기본 규칙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입니다.

www.moj.go.jp/isa/support/portal/tax.html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태국어, 미얀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크메르어, 몽골어, 터키어, 우크라이나어

상담할 때 통역이 필요한 분은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로 전화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크메르어